

##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부록 A

최신 업데이트: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

- 직원과 방문자가 시설에 도착할 때 시행하는 출입시 증상 점검과 관련된 문구를 추가하고 용어를 “안면 가리개”에서 “안면 마스크”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체 이름: \_\_\_\_\_

시설 주소: \_\_\_\_\_

소방법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 \_\_\_\_\_

대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의  
대략적인 총 제곱 피트: \_\_\_\_\_

모든 사업체는 본 **프로토콜**에 적용되며 아래에 열거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은 조치가 있을 경우, 본인의 사업체 또는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프로토콜에서 용어 “가구 구성원”은 “단일 생활 단위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기숙사, 남학생 사교 클럽, 여학생 사교 클럽, 수도원, 수녀원 또는 거주 요양 시설과 같은 기관 집단 주거 시설이나, 하숙집, 호텔 또는 모텔과 같은 상업 주거 시설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sup>1</sup> 용어 “스태프” 및 “직원”은 직원, 자원봉사자, 인턴 및 연수생, 학자 및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용어 “방문자” 또는 “고객”은 사업체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태프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일반 대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용어 “시설”과 “현장”은 허용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부지 및 인접한 건물이나 부지를 의미합니다.

<sup>1</sup> Los Angeles County Code, Title 22. §22.14.060 - F. Family definition. (Ord. 2019-0004 § 1, 2019.) [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2DE\\_CH22.14DE\\_22.14.060F](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2DE_CH22.14DE_22.14.060F)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직원의 재택근무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 ❑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가능한 한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합니다.
- ❑ 모든 직원에게 아프면 출근 또는 **시설에 출입하지 말고**, 해당되는 경우 DPH의 자가 고립 지침을 준수하라고 알렸습니다.
- ❑ 직원/방문자들이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출입 시 **증상 점검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증상 점검은 LACDPH의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이용자들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프로토콜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직원이 도착하면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 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체온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출입 및 참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격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http://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떠한 증상이라도 발견되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http://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안**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와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따른 COVID-19 업무와 관련된 **유급 병가와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 한 명 이상의 직원, 독립 계약자 및/또는 임시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 (확진자)와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알리면, 고용주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을 실행하여 해당 확진자는 자택에서 고립하고, 작업장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은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합니다. 작업장에서 추가 노출이 있으면 COVID-19 관리 조치를 추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프로토콜을 고용주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합니다. **직장에서 COVID-19에 대응**에 관한 보건국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확진자를 확인한 경우, 고용주는 이 집단발병을 공중 보건국에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에 전화하거나 또는 온라인 [www.redcap.link/covidreport](http://www.redcap.link/covidreport)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관리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 조사를 위해 시설에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시설의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안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여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 보건 담당관 명령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모든 직원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개인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혼자 일할 때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본 임시 명령이 유효한 기간에는 이전 명령에서 예외 대상이었던 직원의 키를 넘는 단단한 칸막이가 설치된 큐비클에서 일하는 직원도 이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가 직원들 간에 더 넓은 거리를 제공하고 직원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 휴게실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안면 마스크**를 매일 세탁 또는 교체할 것을 지시합니다.
-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됩니다:
  -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 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게시하기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 테이블을 **8** 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의자 사이에 6 피트 간격 보장하기,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프로 사용 금지 표시하기,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항상 6 피트 신체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하면 야외에 그늘막과 의자를 설치하여 야외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 ❑ 모든 책상이나 개인 작업대는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 휴게실,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다음 일정에 따라 매시간 소독해야 합니다.
  - 휴게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 ❑ 소독제 및 관련 용품을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_\_\_\_\_
- ❑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_\_\_\_\_
- ❑ 비누와 물을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_\_\_\_\_
- ❑ 직원들이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짧은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
- ❑ 각 근로자에게 개인 도구, 장비 및 작업 공간을 할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예: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책상, 볼펜 등)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본 점검표에 설명된 모든 정책은 배달 직원 및 제3자로 사내에 머무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B.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현장에 동시에 있는 최대 인원을 제한하여 고객/방문자와 직원들이 가능한 모든 시간에 서로 최소 6 피트 거리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체적 거리두기 요구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에 허용된 최대 고객 수: \_\_\_\_\_
- 시설 내 최대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관에 직원을 배치하여 조절합니다.
  - 시설이나 현장은 수용인원을 추적 및 제한하기 위해 모든 입구를 모니터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체적 거리 유지를 돕기 위해 하나의 입구와 별도의 출구를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 시각적 표시 등을 이용하여 고객/방문자가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설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천으로 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또는 입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직원들)이 시설 입구 근처이나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시설에 입장하는 인원을 추적하고, 최대 수용인원에 도달한 경우, 시설 밖에서 고객/방문자가 6피트 간격으로 줄을 서도록 안내합니다.
  - 현장 보안 담당자는 고객/방문자와 일반 대중에게 신체적 거리 기준과 안면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상기, 권장하고, 손님과 방문객에게 현장에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되었다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 가능하면 모든 참석자/방문자가 서로 및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적어도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을 재배치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C. 사람들간의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시설 밖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줄을 설 때 등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 두기를 사람들에게 실천하도록 상기시킵니다.
- 시설 또는 현장 내 고객이 줄 서는 구역과 공공 출입구의 보행로에 최소 6 피트 간격으로 테이프 또는 기타 표시를 배치하고, 고객에게 거리 유지를 위해 이 표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 가능하면 주문 구역 ~~과~~ 배송 구역을 구분하여 고객/방문자가 모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 모든 직원/방문자에게 서로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결제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잠시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대중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공간에 적합한 경우, 명확하게 지정된 입구와 별도의 출구를 제공합니다.
- 가능하면 신체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 방향 통로 또는 복도를 지정합니다.
- 가능하면, 탑승자 사이에 신체적 거리 6피트를 유지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탑승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모든 엘리베이터 탑승자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탑승자에 적합한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크기, 건물의 층수, 일일 이동 직원 수를 고려합니다.
-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해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을 개방하고 자주 청소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D. 감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 시설에 도착하는 방문객에게 시설내 또는 시설 부지에서는 항상 안면 가리개 착용하기의 요구조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모든 성인과 만 2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고객에게 제공할 안면 마스크를 준비해 둡니다.

□ 방문자, **고객, 계약업체 또는 공급업체 직원**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증상 점검은 **LACDPH의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이용자들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프로토콜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직원이 도착하면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 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출입 및 참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격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http://ph.lacounty.gov/covidquarantine) 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떠한 증상이라도 발현되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http://ph.lacounty.gov/covidisolation) 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가능한 최대로 작동시켜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휴대용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 효율로 업그레이드, 모든 사무실 및 기타 공간의 외부 공기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 비접촉 결제 기기를 준비했거나, 준비가 불가능하면 결제 기기를 규칙적으로 소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공용 구역과 **부**구역, 그리고 자주 만지는 물건(예: 난간, 엘리베이터 제어기, 문손잡이 또는 손잡이, 신용카드 결제기기, 엘리베이터 버튼, 에스컬레이터 난간 등)은 영업 시간동안 EPA 등록 소독제를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 1시간 단위로 소독합니다.

□ 작업 공간과 시설 전체는 적어도 매일 청소하고, 화장실, 자주 만지는 구역/물건은 좀 더 자주 청소합니다. 쇼핑센터 운영 시간은 정기 심화 청소 및 제품 재고 마련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 공공 화장실은 EPA 승인 소독제로 다음 제조사 지침을 사용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매시간마다 소독합니다:

□ 공공 분수식 식수대를 차단하고, 작동하지 않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시설에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는 고객/방문자는 아이들이 부모 옆에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마스크 허용 연령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휴지, 쓰레기통을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비치했습니다.

□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수 없으면 결제 기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선택 사항 - 다른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예: 노인 전용 시간 제공)

#### E.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프로토콜의 사본을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합니다.
- 시설이나 현장의 모든 입구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방문자, 고객, 계약업체 또는 공급업체 직원들에게 6 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 안면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의 필요성, 정기적인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제 사용의 중요성 및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기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 시설이나 현장 전체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현장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말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시설이나 현장 전체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손 소독제 디스펜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 소매업체는 온라인 매체(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영업시간, 안면 마스크 필수 착용, 제한 수용인원, 사전 주문, 선불, 픽업 및/또는 배송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F.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또는 현장을 위한 조치

- 보통 일반인이 출입했던 화장실은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COVID-19에 효과적인 소독용 물티슈는 쇼핑 카트 및 쇼핑 바구니 근처에 비치합니다.
- 가능하면 매시간마다 카트 및 바구니의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정합니다.
- 손 소독제, 비누 및 물 또는 효과적인 소독제를 시설 입구 또는 근처, 계산대, 매장 내부 또는 사람들이 직접 교류하는 매장 바로 밖 모든 곳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합니다.
- 모든 결제 기기, 펜 및 스타일러스는 매시간마다 소독합니다.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매시간 소독합니다.

#### G.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손님/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매 또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객/방문자 및/또는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고객/방문자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시설은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마지막 개정일:

---

---

---

